W:WOOSUNG

2024년 2월

주간 축산 이슈 뉴스클리핑

2월 2주차 HOT ISSUE

- 내달부터 계란 산지가, 정부 시세로 통일 추진
- 도축장 출하 생축차량, 거점소독시설 거치지 않아도 돼

W:BOVINE

올해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연 2회 검사

올해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농가는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연 2회 받게 되는 등 예방접종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구제역 예방접종의 경우 기존에는 모든 농가가 연 1회 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이 포함된 '2024년도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세부실시요령'을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세부실시요령은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던 대다수 농가들의 예방접종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 농장검사와 도축장검사 등 항체검사 강화를 통한 철저한 예방접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검역본부는 먼저 소 자가접종 농가를 최근 3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우수농가(90% 이상), 상대적 미흡농가(80~90%), 미흡농가(80% 미만)로 구분, 미흡농가는 연 2회 검사, 상대적 미흡농가는 연 1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22%만 무작위 검사하는 등 검사횟수를 차등 적용해 미흡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농장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의 백신항체 도축장 검사물량을 기존 연간 1만 마리에서 10만 마리로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염소 자가접종 농가도 소 자가접종 농가와 동일하게 농가당 검사 마릿수를 기존 5마리에서 16마리로 확대하고, 항체양성률 미흡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철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올해는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역 혈청예찰을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했고 민간검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만큼 촘촘한 감시활동으로 구제역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계약 낙농가들, '잠 못 이뤄'

남양유업의 최대주주가 홍원식 회장에서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로 지난달 31일 변경되면서 남양유업과 계약한 낙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앤코는 최근 홍 회장에게 지분 매매대금 3100억 원을 지불, 최대주주 지분인 52.63%를 손에 넣으며 홍 회장 일가의 60년 오너 경영 체제가 사실상 종결됐다.
이에 따라 낙농산업을 기반으로 시유사업을 전개해 왔던 기존의 남양유업 경영진과 달리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모펀드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을 맡게 되면서 구조조정과 함께 농가에 배당된 쿼터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충청지역의 한 낙농가는 "지속적인 홍 회장 일가의 논란과 더불어 일명 '불가리스 사태'로 촉발된 경영 불안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농가가 지고 있다"면서 "벌써부터 한앤코에서 남양유업 직원들에게 쿼터를 줄이라는 압력을 넣고 있어 만약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농가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한앤코는 낙농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수지타산만을 계산해 농가의 쿼터를 줄일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 낙농가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설 명절 이후 한앤코와 농가들이 만나 결정되는 방향에 따라 대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낙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낙농산업의 수급 특성상 여름에는 생산량이 많고 겨울에는 생산량이 부족해 계절편차에 맞는 수급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한앤코는 이같은 구조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업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낙농생산기반과 국내낙농업 유지·발전 차원에서 낙농산업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농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한앤코가 인수한 남양유업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생산계획을 밝힌 바가 없다"면서 "지금 쿼터 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 관계자는 "쿼터 조정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없다"며 "원유 잉여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낙농가와 낙농진흥회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은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 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을 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적정 사육두수 축산법 적용” 공식 확인

환경부가 가축두수의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실제 가축분뇨 배출량이 50% 이내로 증가한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내렸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적정 사육두수 산정기준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을 공식 질의했다.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에 따른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환경부는 가축에 대한 단위면적당 사육기준은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기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일부 지자체가 적정 가축사육두수의 기준으로 삼아 온 ‘가축분뇨 자원화 표준설계도’의 경우 사육두수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량으로 자원화시설의 용량을 산출하기 위한 것일 뿐 단위면적당 사육두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고 정연우 한돈협회 보성지부장의 비극적 선택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환경부에서도 적정 가축사육두수는 축산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문서로 공식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용량과 적정 가축사육두의 차이에 따른 양돈현장의 혼란도 일부 예상되고 있는 게 현실.

환경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을 묻는 한돈협회의 질의에 대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이번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현장에서 문제가 돼 왔던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혼란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라며 “보성 한돈농가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축장 출하 생축차량, 거점소독시설 거치지 않아도 돼

정부가 도축장 출하 생축차량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방침을 내렸다.
그러나 양돈업계의 개선 요구가 꾸준했던 농장간 이동 생축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유지, 현장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23일 ASF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사항을 일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도축장 출하 관련 생축차량에 대해 도축장으로 바로가는 경우에 한해 농장에서 소독 확인증을 발급,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도축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지자체로 하여금 도축장별로 자체 소독 전담관을 지정, 소독확인증 또는 필증을 확인하고 자체 소독시설로 추가 세척 · 소독케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도축장이 아닌, 생축을 추가로 싣기 위해 다른 농장을 들르는 경우엔 농장 방문시 마다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종돈 분양차량 등 일반 생축 운반차량도 기존 처럼 농장 방문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해야만 한다.
양돈업계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이뤄져 온 거점소독시설 운영이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물꼬가 될 것이라며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거점소독시설 이용으로 인한 또 다른 오염원 노출 위험성이 가장 높게 지적돼 왔던 일반 생축차량의 경우 별다른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종돈장 관계자는 “각종 차량과 사람이 왕래하는 과정에서 거점소독시설 및 주변 도로 등이 오염돼 있을 경우 이곳을 거친 생축차량이 다른 농장으로 가는 게 더 위험하지 않겠느냐”며 “민간 소독시설 지정 기준 등을 확대, 일정 소독시설을 갖춘 농장 및 시설로 거점소독시설을 대체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축사, 농촌 위해 시설 규정은 “기본권 침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축산시설’을 위해 시설로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 축산농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오는 3월 29일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농축산부는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시행 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 시행 규칙에는 농촌 유해 시설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며 악취 방지법 시행 규칙 3조에 따른 악취 배출 시설을 포함했다. 즉 ‘축산 시설’과 주민이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시설까지 농촌 위해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헌법적 ·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법무법인에 검토를 요청했다. 그 결과 법무법인은 이 법안의 시행 규칙 제정안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도 침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는 ‘농업식품기본법’에 의해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인 농촌에서의 생활, 경관 및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축사시설 자체를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모법이 수권한 규율 대상과 목적의 범위는 벗어나는 것으로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악취 배출 시설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위해시설로 지정할 경우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강제 이전 · 철거 및 수용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위임 목적에 벗어난다. 특히 이 법은 계획수립권자 및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모든 축산시설을 농촌위해시설로 정해 농촌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강제 이전 · 철거를 허용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축산농가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돈장 직수입돈, 종돈기준 질병관리를”

일반 양돈장에서 수입하는 돼지에 대해서도 종돈장 기준의 가축질병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종돈생산자협회(회장 민동수)는 지난달 30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이사회에서 일반 양돈장의 종돈 직수입 증가 추세에 주목,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해외 수입 돼지로부터 새로운 질병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 양돈장의 경우 질병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혈통등록시 등록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번호가 부여되고 있는 현실도 개선돼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종돈 분양차량 소독의 위험성에 다시한번 우려를 표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종돈장 우선 지원과 함께 방역시설 고도화 및 종돈 분양전 PRRS 검사비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종돈생산자협회는 이날 제기된 사안을 논리적으로 정리,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함께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계란 산지가, 정부 시세로 통일 추진

오는 3월부터 계란 산지 가격을 정부가 발표한다. 이와 관련 산란계농가들은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의중을 밝히면서도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계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축평원에서 '산지가격'을 발표한다고 공식화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축평원을 비롯, 계란 관련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평원은 그간 계란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 등으로 장기간 '생산자'와 '유통인' 사이에서 상호 불신이 계속해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계란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 등으로 발생하는 상호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키 위해 가격 조사체계 보완 및 가격 대표성 확보 등이 점차 요구되고 있어 투명한 계란 거래가격 형성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추진케 됐다고 설명했다.

계란 산지가격 조사대상은 매입·매출가격이 일치하는 GP(계란유통센터)와 권역별 관내의 거래 농가로 표본 수는 기존 99개소에서 135개소 이상으로 확충하고, 세부적으로 거래물량이 최대인 GP와 관내 거래 농가 20개소, 농장에서 100% 선별처리하는 35개소를 선정, 현재의 가격조사 체계를 보다 더 고도화시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란계농가들은 정부의 정책에 순응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한편 깊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계란 가격 투명화에 농가들은 이를 따른다는 분위기지만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면서 "계란의 특성상 시장 소비에 따라 산지가격이 급변해 실제 농가들은 계란 출하 당시에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전일 거래가격을 통해 산지가를 발표한다는 계획인데, 실제 시장 상황에 대처키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농가는 "그간 대한양계협회, 대한산란계협회서 계란 산지시세(고시가격)를 매일 발표했고, 이를 기준으로 모든 계란의 거래가 이뤄졌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산지가격 발표방식은, 거래가 끝난 후 조사를 통해 현황을 발표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다시 말해 농가서 계란을 출하 시, '기준가격'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해 농가에 피해가 발생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북의 다른 농가도 "현재 생산자단체가 발표하고 있는 고시가격이 모든 계란 거래의 기준"이라며 "그런데 하루아침에 기준가격이 사라진다니 어떤 가격으로 계란을 납품해야 하는지 농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 산란계농가 계란 안전성 연중 검사 실시

구분(검사 시기)	검사 항목
1~4월	생산단계 상시검사
5~8월	진드기가 많아지는 하절기 집중검사
8~11월	식약처 주관 유통단계 검사
11~12월	하반기 입식 등으로 미검사된 농가 검사

정부가 산란계농가에 대해 계란 안전성검사(살충제)를 올 한해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산란계 농가들에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의 계란 검사는 지난 2017년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 대책'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근 몇년간 부적합 농가가 발생치 않고 있다.

올해는 이미 지난 1월부터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표 참조〉 검사는 대상 살충제 성분 34종에 대해 검사가 실시된다. 문제는 대상 농가에서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계란의 출하중지, 회수 · 폐기 조치 및 전문방제업체의 해충방제를 실시하고 원인조사를 통해 농가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것이다.

또 산란성계(노계)의 경우도 농장에서 도계장에 출하되기 전, 마찬가지로 살충제 성분 34종을 검사한다. 이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하를 허용하며, 농장별 산란성계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다. 이때 관할 지자체는 검사 유효기간 내에 출하해 검사가 갈음되는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 산란성계 출하를 제한하고 불시검사를 추진한다.

다만 산란성계 출하전 검사는 원칙적으로 도계장 출하 예정일 3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하도록 산란계농가에 안내가 되며 출하전 검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도계장에 출하를 할 수 없다. 아울러 해당 농장의 계란에 대해서도 살충제 검사가 실시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산란계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리로 2018년 이후에는 검사에서 단 한건도 위반 농가가 없었다"며 "계란 안전성 검사가 현재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농가들이 방역에 몰두하며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고충으로 다가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농가에 불필요한 피해(과태료 등)를 입지 않는 것은 물론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